

식품과학연구소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
제 1 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부설 식품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 라 한다.)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 연구소는 식품과학분야를 연구하여 학교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위치) 연구소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제 4 조 (사업)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천연물 소재 개발
2. 기능성 물질 대량생산 표준화 기술 및 건강 제품 생산
3. 발효 기능성 식품 개발 및 공정개선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 5 조 (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>

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 6 조 (사무직원과 조교) ① 연구소에 사무직원과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직원과 조교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소관업무를 수행한다.

제 7 조 (운영위원회) <삭제 2013.7.1.>

① <삭제 2013.7.1.>

② <삭제 2013.7.1.>

③ <삭제 2013.7.1.>

제 8 조 (심의사항) <삭제 2013.7.1.>

1. <삭제 2013.7.1.>

2. <삭제 2013.7.1.>

3. <삭제 2013.7.1.>

4. <삭제 2013.7.1.>

제 9 조 (소집 및 의결) <삭제 2013.7.1.>

제 10 조 (예산 및 회계) 연구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하고

산학협력단 예산에 포함시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 11 조 (예산총계주의) <삭제 2013.7.1.>

제 12 조 (회계) <삭제 2013.7.1.>

제 13 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